# (플랜트-002) ○○공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

| 공사명    | ㈜○○○ ○○산업단지 공장사옥 신축공사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|
| 사고일시   | 2019년 4월 16일(화) 10:01분경 |                     | 기상상태    | 맑음        |  |
| 소재지    | 경기도 화성시                 | 사고 종류               | 붕괴      |           |  |
| 구조물 손실 | 데크플레이트                  | 인적피해                | 부상 2명   |           |  |
| 장비 손실  | _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관리계획서<br>수립 대상 여부 | 해당( 〇 ) | , 해당없음( ) |  |

## 가. 사고개요

### 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장

○ 공사면적: 건축면적 1,134m², 연면적 2,587m²

○ 공사규모 : 지상 4층

○ 공사기간 : 2019.1~2019.8

#### 2) 사고경위

○ 옥탑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

### 3) 사고원인

○ 외측 방수턱(난간)과 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하면서 콘크리트 하중이 집중되어 데크플레이트의 지지하중을 초과하여 발생한 붕괴사고임

### 나. 재발방지대책

- 당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작업 위치의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·변위 유무 등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.
- 콘크리트의 집중 타설, 벽체 및 슬래브 일괄 타설, 슬래브 거푸집 상부에 자재 집중 적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나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.
-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양생 전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하여 타설하여야 한다.
-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에는 거푸집 등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


